

## 상담 수련과정에서 비윤리 경험의 실태

강 이 영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금 명 자

대구대학교

조 민 희

한성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에게 상담 수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이나 태도를 설문 조사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 비윤리적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격증 유무, 수퍼비전 횟수, 근무기관에 따른 차이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8년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중 윤리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소속 회원 996명에게 온라인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38개 문항 중 7개 문항에서 2.0점 이상으로 비윤리적 실태가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영역 문항들이 많았다. 특히 '상담동의서는 받았지만 수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받지 않았다'는 문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소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바쁠 때 상담약속을 취소하는 등 11개의 문항에서 자격증을 가진 상담자들이 수련생들보다 더 많이 비윤리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나 수퍼바이저의 특정 행동이 절대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담수련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동의 실태를 이해하여 이를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윤리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윤리강령의 개정 필요성 등 기초자료로서의 의미 등이 제언과 함께 논의되었다.

주요어 : 비윤리 경험, 상담 수련과정, 윤리강령

† 교신저자 : 금명자, 대구대학교 심리학과, (38253)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 053 850 6361, E-mail : mjkeum@daegu.ac.kr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어떤 영역이든 과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더불어 윤리적 행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Tofler(1990)는 이미 20여 년 전에 그의 저서 ‘권력이동’에서 고품질 권력으로서 지식을 제안하면서 미래에는 윤리를 다루는 종교학파가 대학 전공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가 말했던 미래는 이미 현재가 되었다. 그리고 종교학파는 아니지만 지식을 가진 전문가 집단에서의 윤리적 갈등이 학계의 이슈가 되고 있다.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에서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는 순전히 개인의 윤리 의식에 의존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이라고 명세화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외상, 중독, 우울 등 현대사회의 심리정신적 영역을 다루는 상담자들은 자칫 전문성이라는 고품질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윤리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경계하고, 학회 차원에서는 상담 윤리 강령을 재정비하고 상담 윤리 교육을 자격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상담심리는 과학적 전문영역이며, 실제로 내담자는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상담자가 전문성과 양육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Tinsley, Workman, & Kass, 1980). 상담자는 전문가로서 책무와 의무를 지니며 이러한 노력은 상담자의 행동 원칙이 되고 기초적 윤리 원칙이 된다(최해림, 이수용, 금명자, 유영권, 안현의, 2010). 상담 윤리란 전문가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작업하는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이고 규범이다(Hill, 2009). 학회의 윤리강령은 학회원 다수가 합의를 거쳐 추구하고자 하는 지침이며 이러한 원칙과 규범은 개인적인 신념과 구별된다. 상담과정

에서 상담자의 상담 윤리 실천은 상담자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요소 일뿐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하다(우흥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상담심리학회는 활동에서 윤리적 행동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상담심리사들 30,322명(2018년 5월 현재)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을 제정·발표하였고, 2004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 개정을 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대규모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3년 윤리 강령 제정은 현장의 요구로 이루어졌으며,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와 미국상담학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ACA)의 윤리강령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상담 현장에 적절하게 적용한 것(최해림, 2002)이어서 우리나라의 상담문화와 윤리적 갈등들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번 2018년에 개정된 상담심리사 윤리강령은 우리나라 상담 현장에 맞추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되었다. 윤리강령의 우선적인 목표는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상담자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변화된 상담심리사 수련 현장을 반영하여 상담기록물을 포함한 ‘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대폭 수정하고, ‘수퍼비전 및 상담자 교육’에 관한 윤리 조항을 신설하였다.

상담을 요청하는 내담자의 요구와 문제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상담자 수도 증가하여 상담자의 자질 검증과 윤리적 책무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오송희, 이정아, 김은아(2016)는 1991년 이후 2015년에 이르기까지 상담윤리와 관련한 연구들 56편을

개관하였는데, 주제별로는 윤리강령, 법, 제도에 관련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많은 주제는 상담수련(훈련)과 슈퍼비전 관련 연구였다. 최해림(2002)은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심리사 205명을 대상으로 특정 상담자 행동이 윤리적인지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하게 하였는데, 그 중 ‘방금 상담전문가 자격증을 받은 상담자가 곧 슈퍼비전을 받을 슈퍼바이저를 구한다’라는 문항에서 45%는 윤리적, 50%는 비윤리적, 5%는 무응답을 하여, 슈퍼바이저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이 중요하지만 자격증 취득만으로 바로 슈퍼비전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우홍련 등(2015)은 자격증이 없는 상담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격증을 가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갈등 영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들은 ‘상담자의 역량 및 전문성’, ‘집단상담’, 그리고 ‘슈퍼비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제 및 갈등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즉 상담 수련과정 중에 윤리적 갈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슈퍼비전이란 슈퍼바이저와 상담훈련 과정에 있는 슈퍼바이저와의 관계를 통해 슈퍼바이저가 상담전문가로 성장하도록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슈퍼바이저의 개인적 문제가 상담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성찰하게 하여 개인적 성장과 인식에 이르도록 돕는 과정이다(Ladany, & Bradley, 2013). 윤리적 상담에서 슈퍼비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슈퍼비전 관계에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담 수련과정 중인 슈퍼바이저는 슈퍼비전을 통해 훈련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 사이에 존재하는 권

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권력이 슈퍼바이저와 내담자에게 끼칠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슈퍼비전에서의 윤리가 더욱 강조된다(Ladany, & Bradley, 2013). Ladany, Lehrman - Waterman, Molinaro, Wolgast(1999)는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직무수행 연구를 통해 151명 수련생 표본의 51%가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적어도 한가지의 윤리 위반을 했다고 보고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윤, 최유리(2017)는 슈퍼바이저의 19가지 윤리지침 항목에서 평균 10.99개 윤리지침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5.74개의 윤리지침은 불이행되었다고 하였다. 슈퍼비전 윤리를 다룬 연구들은 슈퍼바이저가 윤리적 지침을 어길수록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가 낮아지며 슈퍼바이저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덜 할수록 슈퍼비전 작업동맹과 슈퍼비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이승은, 정남운, 2003;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Ellis, 2001). 국외에서도 슈퍼비전의 윤리를 중요하게 두고 있다는 것은 소속 학회의 윤리강령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국심리학회 윤리 강령에서는 윤리 강령 10가지 항목 중 ‘교육 및 훈련’을 제정하여 슈퍼비전 관계의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또한 미국상담학회에서는 ‘슈퍼비전, 훈련, 교육’의 항목에서 슈퍼비전의 윤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윤리강령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지침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윤리강령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 상담자의 윤리적 대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판단해야할 때가 많다. 슈퍼비전의 윤리를 다루는 연구들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에게 윤리적 실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우흥련 등, 2015; 안하안 등, 2017). 일반적으로 상담윤리에서 ‘비윤리적(unethic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윤리 규정을 심하게 위반한 경우만을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윤리 위반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다(Corey, Corey, & Callanan, 2011). 따라서 사소한 부주의를 비윤리적인 것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비윤리성을 예방하는 중요한 출발이다. 이같은 경각심을 통해 작은 윤리적 위반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바른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Welfel, 2005). 본 연구에서는 2018년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개정된 윤리강령 11가지 영역 중 상담심리사의 수련과정에서 비윤리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출하고,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질문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들 문항은 상담 수련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윤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경험의 정도를 질문하는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 상담 수련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비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고 이를 ‘윤리강령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상담 수련과정에서의 비윤리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으로는 한국상담심리학회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메일로 보내 실태조사에 임하게 하

였으며, 10일 동안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응답을 회수하여 996부의 설문 응답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 성별은 남성 111명(11.1%), 여성 885명(88.9%)이고, 연령별 분포는 20세-29세 112명(12.2%), 30세-39세 326명(32.7%), 40세-49세 315명(31.6%), 50세 이상이 233명(23.4%)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학사 7명(0.7%), 석사과정 175명(17.6%), 석사 523명(52.5%), 박사과정 79명(18%), 박사 112명(11.2%)로 나타났다. 수련 수준은 1급 자격 135명(10.5%), 2급 자격(1급 수련과정 중) 342명(34.3%), 1급 수련(2급 자격증 없음) 131명, 13.2%, 2급 수련 388명(39%)으로 나타났다. 상담경력은 1년 미만 105명(10.5%), 1년 이상-3년 미만 261명(26.2%), 3년 이상-5년 미만 212명(21.3%), 5년 이상-10년 미만 254명(25.5%), 10년 이상 164명(16.5%)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은 대학상담센터 303명(30.4%), 초중고 교육청상담실 102명(10.2%), 국공립상담센터 249명(25%), 개인상담소 342명(34.3%)으로 나타났다. 개인수퍼비전을 받은 경험은 5회 미만(176명, 17.7%), 5회 이상-10회 미만 158명(15.9%), 10회 이상-30회 미만 309명(31%), 30회 이상-50회 미만 156명(15.7%), 50회 이상 197명(19.8%)으로 나타났다. 1급 자격 소지자 대상의 경우, 개인수퍼비전 실시경험은 5회 미만(25명, 18.5%), 5회 이상-10회 미만 10명(7.4%), 10회 이상-30회 미만 28명(20.7%), 30회 이상-50회 미만 10명(7.4%), 50회 이상 62명(45.9%)으로 나타났고, 집단적 수퍼비전 실시 경험은 5회 미만 51명(37.8%), 5회 이상-10회 미만 19명(14.1%), 10회 이상-30회 미만 23명(17%), 30회 이상-50회 미만 7명(5.2%), 50회 이상 35명(25.9%)으로 나타났다.

설문지 개발 연구 절차

문항을 선정한 연구자 3명은 상담전공 교수 2명(상담경력 37년과 상담경력 29년) 상담센터 교수 1명(상담경력 7년)이며, 모두 상담관련 박사학위와 상담심리사 1급 자격을 소지하였다. 1차 문항 선정에서 문항의 구성은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강령, 문헌연구(우홍련 등, 2015; 최해림, 2002), 2017년 학회 윤리 실태조사 결과,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서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상담 수련과정에서의 비윤리적 문항을 추출하였다. 문항별 하위유형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요강에 의거하여 분류하였고, 윤리요강에 속하지 않는 정직성과 지도교수와의 이중관계 등의 하위유형은 사전경험조사에 의해 분류되었다. 1차 설문지 선정 후 상담자 경력이 다양한 10명에게 사전 실시를 통해 문항 실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사전 설문 실시 후 피검자들의 의견과 연구자 3명의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후 최종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문항은 슈퍼바이저 총 33문항, 슈퍼바이저 총 5문항이었으며, 내적합치도 (chronbach's  $\alpha$ )는 각각 .78, .66으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들은 SPSS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통해 슈퍼바이저 및 슈퍼바이저의 비윤리경험의 문항별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자격증 유/무, 개인 슈퍼비전 받은 경험 횟수, 소속기관에 따라 각 문항의 평균차이를 독립표본 t검증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슈퍼바이저 및 슈퍼바이저의 비윤리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총 38문항에 대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슈퍼바이저가 경험하는 비윤리적 행동 33문항에 대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슈퍼바이저에게 제시된 비윤리적 경험 5문항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점 리커트식 척도(1점: '전혀 없었다'~5점: '항상 있었다')로 구성되었지만, 평균 값이 2점('한두 번 있었다') 이상인 문항을 의미있게 해석하였다. 한두 번이라도 비윤리 경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번('슈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7번('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12번('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한다'), 22번('상담이 종료된 후, 3년 이상이 지난 상담파일을 가지고 있다'), 23번('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24번('상담동의서를 통해 슈퍼비전 동의를 받은 후, 실제 슈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32번(2.69점, '슈퍼비전 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낸다')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없었다'의 응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3번('슈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6번('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다'), 7번('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10번('기관의 일이 바쁠 때 내담자와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2번('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

표 1. 슈퍼바이저의 비윤리 경험 빈도 (n=996)

하위유형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M(SD)
전문가로서의 태도	4. 실습이나 인턴기간 동안 슈퍼비전을 받 지 않고 상담한다.	573 (57.5%)	223 (22.4%)	136 (13.7%)	56 (5.6%)	8 (0.8%)	1.70 (0.96)
	6. 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 다.	369 (37.0%)	380 (38.2%)	203 (20.4%)	37 (3.7%)	7 (0.7%)	1.93 (0.88)
	11. 수련생임을 밝히지 않고 상담을 한다.	605 (60.7%)	181 (18.2%)	108 (10.8%)	69 (6.9%)	33 (3.3%)	1.74 (1.11)
	12.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한다.	163 (16.4%)	329 (33.0%)	307 (30.8%)	165 (16.6%)	32 (3.2%)	2.57 (1.05)
	14.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 자를 상담한다.	416 (41.8%)	422 (42.4%)	130 (13.1%)	22 (2.2%)	6 (0.6%)	1.78 (0.80)
	33. 가운을 입고 상담을 한다.	917 (92.1%)	21 (2.1%)	31 (3.1%)	13 (1.3%)	14 (1.4%)	1.18 (0.68)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1. 내담자의 동의 없이 슈퍼비전을 받는 다.	513 (51.5%)	219 (22%)	152 (15.3%)	75 (7.5%)	37 (3.7%)	1.90 (1.14)
	10. 기관의 일이 바쁠 때, 내담자와의 약속 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412 (41.4%)	351 (35.2%)	184 (18.5%)	45 (4.5%)	4 (0.4%)	1.87 (0.89)
	24. 상담동의서를 통해 슈퍼비전 동의를 받 은 후, 실제 슈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252 (25.3%)	212 (21.3%)	160 (16.1%)	219 (22.0%)	153 (15.4%)	2.81 (1.42)
정보의 보호 및 관리	7.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301 (30.2%)	319 (32.0%)	248 (24.9%)	100 (10.0%)	28 (2.8%)	2.23 (1.07)
	17. 공개사례 발표 시, 다른 사람이 슈퍼비 전 받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다.	898 (90.2%)	75 (7.5%)	16 (1.6%)	6 (0.6%)	1 (0.1%)	1.13 (0.44)
	22. 상담이 종료된 후, 3년 이상이 지난 상 담파일을 가지고 있다.	536 (53.8%)	168 (16.9%)	119 (11.0%)	98 (9.8%)	84 (8.4%)	2.02 (1.34)
	23.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개인 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455 (45.7%)	179 (18.0%)	132 (13.3%)	138 (13.9%)	92 (9.2%)	2.23 (1.39)
	25. 일반인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을 말하 지 않고 내담자 문제를 이야기하여 도 움을 받을 때가 있다.	643 (64.6%)	259 (26.0%)	73 (7.3%)	18 (1.8%)	3 (0.3%)	1.47 (0.74)
	26. 상담 시 내담자 앞에서 노트북으로 상 담을 기록하고 상담 파일을 보관한다.	945 (94.9%)	21 (2.1%)	15 (1.5%)	9 (0.9%)	6 (0.6%)	1.10 (0.50)
	27. 슈퍼비전을 개방된 공간에서 받은 적이 있다	823 (82.6%)	115 (11.5%)	45 (4.5%)	12 (1.2%)	1 (0.1%)	1.25 (0.60)
	29. 슈퍼바이저가 자신의 슈퍼비전 내용 을 녹음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954 (95.8%)	36 (3.6%)	4 (0.4%)	2 (0.2%)	0	1.05 (0.26)
	32. 슈퍼비전 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비밀 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낸다.	291 (29.2%)	208 (20.9%)	178 (17.9%)	152 (15.3%)	167 (16.8%)	2.69 (1.45)

표 1. 슈퍼바이저의 비윤리 경험 빈도 (n=996) (계속)

하위유형	문항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M(SD)	
심리평가	8.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그 내담자에게 필요 없는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601 (60.3%)	267 (26.8%)	96 (9.6%)	22 (2.2%)	10 (1.0%)	1.57 (0.83)	
	2. 슈퍼비전 시, 실제 상담내용의 일부를 슈퍼바이저에게 숨긴다.	722 (72.5%)	199 (20.0%)	61 (6.1%)	10 (1.9%)	4 (0.4%)	1.37 (0.68)	
	3. 슈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430 (43.2%)	147 (14.8%)	187 (18.8%)	172 (17.3%)	60 (6.0%)	2.28 (1.33)	
	13. 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 분석을 받는다.	653 (65.6%)	149 (15.0%)	97 (9.7%)	69 (6.9%)	28 (2.8%)	1.66 (1.08)	
	15. 슈퍼바이저가 자신에게 교육분석을 받도록 권유한다.	719 (72.2%)	182 (18.3%)	61 (6.1%)	23 (2.3%)	11 (1.1%)	1.42 (0.80)	
	16. 슈퍼비전 시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592 (59.4%)	245 (24.6%)	103 (10.3%)	40 (4.0%)	16 (1.6%)	1.64 (0.93)	
	19. 지도교수에게 슈퍼비전을 받고 슈퍼비전료를 지불한다.	803 (80.6%)	53 (5.3%)	48 (4.8%)	38 (3.8%)	54 (5.4%)	1.48 (1.11)	
	21. 지도교수가 진행하는 집단상담에 집단 상담료를 지불하고 참여한다.	811 (81.4%)	74 (7.4%)	36 (3.6%)	21 (2.1%)	54 (5.4%)	1.43 (1.05)	
	28.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저 수준에 맞지 않는 과한 비용을 요구한다.	802 (80.5%)	115 (11.5%)	43 (4.3%)	23 (2.3%)	13 (1.3%)	1.32 (0.78)	
	30. 슈퍼바이저가 사적인 부탁을 한다.	925 (92.9%)	47 (4.7%)	13 (1.3%)	10 (1.0%)	1 (0.1%)	1.11 (0.44)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31. 슈퍼비전 비용을 미리 고지하지 않고, 슈퍼비전 후 비용을 청구한다.	921 (92.5%)	42 (4.2%)	16 (1.6%)	7 (0.7%)	10 (1.0%)	1.14 (0.56)	
	9. 슈퍼비전 축어록을 일부 수정한다.	712 (71.5%)	242 (24.3%)	37 (3.7%)	4 (0.4%)	1 (0.1%)	1.33 (0.58)	
	18. 상담심리사 자격증이 없는데 슈퍼비전을 하고 자격을 가진 상담자가 사인을 한다.	957 (96.1%)	24 (2.4%)	11 (1.1%)	4 (0.4%)	0	1.06 (0.32)	
	정직성	20. 동료상담자가 비윤리적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당사자와 논의하였다.	766 (76.9%)	184 (18.5%)	38 (3.8%)	8 (.8%)	0	1.29 (0.57)
		윤리문제 해결						

는데 상담을 한다'), 14번('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한다'), 23번('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24번('상담동의서를 통해 슈퍼비전 동의를 받은 후, 실제 슈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32번('수퍼비

전 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낸다')으로 나타났다. 반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비윤리적 경험 문항에서 '전혀 없었다'의 응답률이 50% 이하인 문항은 35번('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1년 내에 슈퍼비전을 한다')으로 나타났다.

표 2. 슈퍼바이저의 비윤리 경험 빈도(n=135)

하위유형	내 용	전혀 없었다	한두 번 있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항상 있었다	M(SD)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35.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1년 내에 슈퍼비전을 한다.	61 (47.7%)	32 (25%)	20 (15.6%)	11 (8.6%)	4 (3.1%)	1.95 (1.13)
	36.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 또는 기법을 슈퍼비전 한다.	101 (78.9%)	24 (18.8%)	2 (1.6%)	1 (0.8%)	0	1.24 (0.51)
	38. 심리평가를 수련 받지 않고 심리 평가 슈퍼비전을 한다.	119 (94.4%)	4 (3.2%)	3 (2.4%)	0	0	1.08 (0.35)
정직성	34. 슈퍼비전 자료를 미리 읽어오지 않고 슈퍼비전 한다.	119 (93%)	8 (6.3%)	0	1 (.8%)	0	1.09 (0.36)
	37. 슈퍼비전을 하지 않고, 슈퍼비전 사인을 한다.	124 (97.6%)	2 (1.6%)	1 (0.8%)	0	0	1.03 (0.22)

조건에 따른 비윤리 경험의 차별성

자격증, 슈퍼비전 받은 횟수 및 소속기관 등 3가지 조건에 따라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비윤리 정도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라 각 문항별 평균차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총 33문항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상담심

표 3. 자격증 유/무에 따라 비윤리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과 평균

문항	자격소지 집단(n=477)	수련집단(n=519)	t	p	cohen's d
1	2.06(1.14)	1.75(1.12)	4.33***	.000	.27
2	1.42(.70)	1.32(.66)	2.26*	.024	.15
5	1.56(.87)	1.35(.77)	4.16***	.000	.26
6	2.01(.89)	1.85(.88)	2.95**	.003	.18
7	2.37(1.02)	2.10(1.11)	4.01***	.000	.25
10	2.02(.90)	1.74(.87)	4.90***	.000	.32
12	2.74(1.02)	2.42(1.05)	4.96***	.000	.31
13	1.53(1.01)	1.79(1.13)	-3.92***	.000	.24
14	1.87(.79)	1.69(.80)	3.45**	.001	.23
22	2.21(1.32)	1.85(1.34)	4.31***	.000	.27
24	2.92(1.34)	2.71(1.49)	2.40*	.017	.15
27	1.29(.61)	1.21(.59)	2.08*	.038	.13
32	2.79(1.43)	2.61(1.47)	1.99*	.046	.12

\*\*\*p<.001, \*\*p<.01, \*p<.05



리사 1급이나 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격 소지 집단,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수련집단에 해당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에 대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33문항 중 13개 문항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13번 문항(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분석을 받는다)은 자격소지 집단에 비하여 수련집

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 나머지 문항들은 수련집단에 비하여 자격소지 집단이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비윤리적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 수퍼비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총 33문항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표 4). 집단 구분은 수퍼비전 30회를 기

표 4. 개인 수퍼비전 받은 횟수에 따른 비윤리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과 평균

문항	30회 이상(n=353)	30회 미만(n=643)	t	p	cohen's d
1	2.15(1.18)	1.76(1.09)	5.04***	.000	.34
2	1.44(.67)	1.33(.69)	2.55*	.011	.16
5	1.54(.89)	1.40(.79)	2.55*	.011	.17
6	2.01(.89)	1.88(.88)	2.11*	.035	.15
7	2.32(.99)	2.18(1.12)	1.99*	.047	.13
10	1.97(.87)	1.82(.91)	2.46*	.014	.17
12	2.74(.99)	2.48(1.07)	3.85***	.000	.25
13	1.56(1.05)	1.72(1.10)	-2.18*	.029	.15
14	1.93(.78)	1.69(.80)	4.57***	.000	.30
16	1.75(.93)	1.58(.93)	2.84**	.005	.18
17	1.17(.52)	1.11(.39)	1.98*	.048	.13
18	1.10(.42)	1.04(.24)	2.61**	.009	.18
20	1.35(.62)	1.25(.55)	2.50*	.013	.17
22	2.41(1.37)	1.81(1.28)	6.68***	.000	.45
24	3.00(1.35)	2.70(1.45)	3.29*	.001	.21
26	1.16(.62)	1.07(.42)	2.49*	.013	.17
27	1.34(.70)	1.19(.53)	3.41**	.001	.24
29	1.08(.34)	1.03(.20)	2.50*	.013	.18
30	1.16(.55)	1.08(.37)	2.72**	.007	.17
32	2.98(1.43)	2.54(1.44)	4.69***	.000	.31
33	1.27(.79)	1.13(.60)	2.82**	.005	.00

\*\*\* $p < .001$ , \*\* $p < .01$ , \* $p < .05$

준으로, 30회 미만 집단과 30회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두 21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그 중 13번 문항(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분석을 받는다)이 개인수퍼비전 30회 미만 집단이 수퍼비전 30회 이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나머지 문항들은 수퍼비전 30회 이상 집단이 30회 미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수퍼비전을 많이 받은 집단에서 비윤리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속기관에 따라 각 문항별 평균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총 33문항에 대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표 5).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기관에 소속된 상담자(대학교 상담센터, 초중고 교육청상담실, 국공립

상담센터)와 개인상담소 소속 상담자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33개 문항 중 11개 문항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5번(기관 상급자의 요구에 의해 내담자와의 상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6번(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다), 9번(수퍼비전 축어록을 일부 수정한다), 10번(기관의 일이 바쁠 때, 내담자와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2번(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한다) 문항의 경우, 기관 소속 상담자 집단이 개인상담소 소속 상담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1번(내담자의 동의 없이 수퍼비전 받는다), 3번(수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13번(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 분석을 받는다), 16번(수퍼비전 시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22번(상담이 종료된 후, 3년 이상이 지난 상담파일을 가지고 있다), 23번(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표 5. 소속기관에 따른 비윤리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 문항과 평균

문항	기관 소속(n=654)	개인상담소(n=342)	t	p	cohen's d
1	1.81(1.09)	2.07(1.21)	-3.27**	.001	.23
3	2.18(1.31)	2.49(1.35)	-3.50***	.000	.23
5	1.50(.88)	1.35(.71)	2.87**	.004	.19
6	2.00(.91)	1.80(.82)	3.46**	.001	.23
9	1.37(.60)	1.27(.52)	2.68**	.008	.18
10	1.98(.95)	1.67(.75)	5.58***	.000	.36
12	2.70(1.06)	2.33(.99)	5.28***	.000	.36
13	1.59(1.01)	1.80(1.20)	-2.79**	.005	.19
16	1.59(.91)	1.72(.98)	-2.07*	.039	.14
22	1.91(1.27)	2.23(1.45)	-3.47**	.001	.23
33	1.12(.55)	1.29(.86)	-3.39**	.001	.24

\*\*\* $p < .001$ , \*\* $p < .01$ , \* $p < .05$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문항의 경우, 기관 소속 상담자에 비하여 개인 상담소 소속 상담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는 2018년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11가지 영역 중 상담 수련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과 태도를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질문 내용을 기초로 38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상담 수련과정에서의 비윤리 경험 정도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들은 전문가로서의 태도, 내담자의 복지 및 권리에 대한 존중,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심리평가, 수련감독 및 상담자 교육, 정직성, 윤리문제 해결에 관한 것들이며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구성하였다. 더불어 수퍼바이저들에게는 별도의 5개 문항을 제시하여 수퍼바이저로서의 윤리성과 정직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문항 응답에서 평균점수가 높아질수록 상담 수련과정 동안 비윤리적인 행동과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에서는 응답자들의 평균값이 2.0점 이상인 문항들과 ‘비윤리적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문항이 50% 이하인 문항들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균값이 2점 이상이라는 것은 제시된 비윤리적인 상황들이 최소한 ‘한두 번 있었다’고 응답한 것이다. 비윤리적인 경험은 한두 번의 경험도 의미가 있다. 한두 번 이상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50%이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상담 수련과정 중의 상담자들이 빈번하게 비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

다. 또한 자격증의 유무, 개인 수퍼비전 받은 횟수의 정도 및 소속기관에 따라 비윤리적 경험의 차이를 보이는 문항들을 통해 상담 윤리 갈등 경험과 대처를 논의하고자 한다.

상담심리사들이 비윤리적 행동을 하는 빈도에서 평균 2점 이상을 보인 문항들은 모두 7개 문항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중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속하는 문항이 4개였고, 나머지는 각 영역에 한 개씩 포함되었다.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영역에서는 ‘상담 회기 기록 등 내담자 관련 자료를 상담실 밖으로 가지고 나온 적이 있다’,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수퍼비전 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낸다’, ‘상담동의서를 통해 수퍼비전 동의를 받은 후, 실제 수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었다. 우흥련 등(2015)의 연구에서도 상담한 자료를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경험이 50% 정도로 나타났다. Corey 등(2011)은 우리가 과학기술에 의존하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소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파일로 내담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관하거나 e-mail로 전달할 때는 내담자의 사적 정보가 외부로 유출 될지 모른다는 것을 고려하여 비밀번호 설정과 파일 보관에 대해 안전을 확보해야한다.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것은 윤리강령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정신전문가들에게 첫 번째 의무이며 우선순위이다(Donner, VandeCreek, Gonsiorek, & Fisher, 2008). 특히 2017년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2018년 개정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서도 내담자의 정보와 관련된 ‘전자 정보의 관리 및 비밀보호(1)항’을 신설 개정하여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하여 상담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경우, 상담심리사는 기록의 유출 또는 분실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과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내담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의 조항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윤리 조항이 상담자들에게 여전히 정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상담심리사의 윤리교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자기기 및 매체를 활용한 상담관련 정보에 대해 상담자가 어떻게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함을 알 수 있다.

연구에서 제시한 비윤리적 행동 문항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비윤리적 행동을 경험했다는 문항들은 앞에서 제시된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영역 외에 6문항들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에 해당되는 문항들이었다. 특히, 비윤리적 행동을 했다는 응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에는 상담자의 소진과 관련된 문항들이 많았다.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한다’,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한다’, ‘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다’들이다. 이는 상담자의 전문가로서의 태도인 ‘성실성’과 관련된 문제에 해당된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는 “상담심리사는 내담자가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상담을 지속하는 것

이 더 이상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오히려 내담자에게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면 상담 관계를 종결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담자가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있다하더라도 상담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일이 바쁠 때 내담자와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도 나타났다. 이는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 강령 중 “상담기관 운영자는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상담 활동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조항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관의 운영이 내담자의 권리와 복지보다 우선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퍼바이저의 비윤리적 경험 문항에서 비윤리적 경험의 응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은 ‘상담심리사 1급 취득 후 1년 내에 수퍼비전을 한다’에서만 해당되었다.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수련과정은 수퍼바이저로서 자격심사를 받은 후 상담심리사 1급이 되자마자 바로 수퍼바이저가 된다. 따라서 이 문항에 응답한 52.3%의 상담심리사 1급이 현재의 윤리강령상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퍼바이저가 바로 수퍼바이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상담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수퍼비전의 기술과 반드시 같지 않기에 수퍼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Corey et al.,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퍼바이저들이 공식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고 바로 수퍼비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상담심리사를 위한 상담교육과 윤리적 지침을 수퍼바이저에게도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Stoltenberg, & Delworth, 1987). 하지만 Ladany와 Bradley(2013)

에 의하면 슈퍼바이저에서 슈퍼바이저가 되는 과정으로 이행은 슈퍼비전의 정체성이 발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슈퍼바이저 자격 취득에서는 슈퍼바이저 훈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자격증 취득이후 별도의 슈퍼바이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슈퍼바이저의 정체성 발달과 윤리성 발달을 위해서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이후 슈퍼바이저 교육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자격증 소지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련 과정 중인 집단이 자격증 소지 집단에 비해서 비윤리적 경험 평균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만으로 자격증 소지를 한 집단이 수련과정 중인 집단에 비해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문항은 ‘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분석을 받는다’가 자격소지 집단에 비하여 수련집단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개인 슈퍼비전을 받은 횟수에 따른 t검증 분석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즉, 개인 슈퍼비전 30회 미만 집단이 슈퍼비전 30회 이상 집단보다 ‘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 분석을 받는다’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률을 살펴보면 비윤리적 경험이 ‘한두 번 이상 있었다’ 이상의 응답이 34.4%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인 65.6%는 슈퍼비전과 교육분석이 분리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중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다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슈퍼비전의 이중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판적 시각

이 우세하다. 이는 슈퍼비전과 교육의 이중관계가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Gabbard, 1994, Gottlieb, Robinson, & Younggren, 2007; Kitchner, 2000).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에는 교육과 상담의 이중관계에 대해서 비윤리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과 슈퍼비전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비윤리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금명자, 2018).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기관 소속 상담심리사들이 개인상담소 소속 상담심리사보다 비윤리 경험 정도가 높게 나타난 문항들은 ‘기관 상급자의 요구에 의해 내담자와의 상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기관의 일이 바쁠 때, 내담자와의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다’, ‘상담심리사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한다’ 등 이었다. 기관 소속 상담심리사들은 행정적인 업무와 내담자와의 관계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담심리사들이 상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기관의 요구와 상담자로서의 책임사이의 적절한 준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상담자들이 소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ope와 Vasquez(2007)은 상담자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상담자의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다. 상담자의 소진은 윤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이를 윤리강령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심리학회와 미국상담학회의 윤리강령에서도 자신의 문제 또는 소진을 인식한 상담자들은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중지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APA, 2017; ACA, 2014) 상담자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여 자신의 고통으로 감각이 무뎠다면 내담자의 고통을 제대로 다룰 수 없으며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다(Corey et al., 2011). Watkins(1985)는 상담자들이 소진과 효과 없음을 인식하고도 종결하지 않고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상담자의 역전이거나 과도한 책임감에 따른 것일 수 있다고 하였다. 상담자들이 소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담자들 자신이 소진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자각은 윤리적 상담의 첫 번째 단계로 현실에 대한 인식과 변화 요구를 표현한 것이다. 상담자들은 소진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자각하고 있지만, 소진의 과정은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 어렵다. 소진상황에서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몰두하기가 힘들지만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소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우선 자각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자들은 수퍼비전 등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또는 소진의 원인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기관에서도 상담자의 소진 예방과 대처를 위해 휴가 등의 정책적 배려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관 소속 상담심리사에 비하여 개인 상담소 소속 상담심리사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문항들은 ‘정보 및 비밀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내담자의 동의 없이 수퍼비전 받는다’, ‘상담이 종료된 후, 3년 이상 지난 상담파일을 가지고 있다’, ‘상담 기록지를 따로 USB에 담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로 나타났다. 개인상담소 소속 상담심리사들이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대해 기관 상담

심리사들보다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수퍼비전 및 교육과 관련된 항목들이었다. ‘수퍼바이저에게 교육상담을 받는다’, ‘수업을 듣는 교수나 지도교수에게 교육분석을 받는다’, ‘수퍼비전 시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 등의 응답에서 기관 소속 상담심리사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시 말해 개인상담소 소속 상담심리사의 경우 수퍼바이저, 교육, 상담관계의 형성이 기관 소속의 상담심리사들보다 더욱 혼란스러움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 ‘수퍼비전 시에 인간적인 모욕감을 받은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면 59.4%인 592명이 그런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24.6%인 245명은 ‘한두 번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1.6%인 16명의 경우 ‘항상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교육적 태도가 수퍼바이저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문제 있는 수퍼바이저를 만난 수퍼바이저는 일반적으로 문제 있는 상담자를 만난 내담자보다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Corey et al., 2011). 수퍼바이저의 정체감과 수퍼바이저의 복지를 위해 수퍼바이저가 되기 전 수퍼비전 사전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 외 문항 반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8개의 문항 응답 중 평균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2.81로 ‘상담동의서를 통해 수퍼비전 동의를 받은 후, 실제 수퍼비전을 받는 시점에는 허락을 받지 않는다’였다. 이는 내담자와의 수퍼비전에 대한 사전동의를 접수면접 초기 1회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고 매 수퍼비전 시 내담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상담자들은 수퍼비전 시 내담자에게 매번 동의를 받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담자가 승낙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평균 값이 가장 낮게 나온 문항은 ‘수퍼바이저가 자신의 수퍼비전 내용을 녹음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로 1.05점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응답률은 가장 낮았지만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퍼비전 자료를 메일로 보낼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보낸다’의 경우는 29.2%인 291명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자료를 보내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전체의 70.2%가 비밀번호 설정을 하지 않을 때가 있거나 ‘항상 하지 않는다’(16.8%)고 응답하였다. ‘전문가로서의 태도’ 중에서는 ‘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였다’에서는 63%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가진 내담자를 상담한다’의 문항도 58.2%의 상담심리사가 그런 적이 ‘한두 번 이상 있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상담심리사의 ‘정직성’에 해당되는 ‘수퍼비전 녹여록을 일부 수정한다’가 71.5%에 해당되는 712명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윤리였으나 28.5%는 수퍼비전 녹여록을 일부 수정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Warthington, Tan, Poulin(2002) 등의 연구에서 수퍼바이저의 85%가 비교적 가벼운 비윤리적 행동을 하고 그중 7%정도는 수퍼비전에서 내담자에 관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심리평가 부분에서는 자격 조건을 맞추기 위하여 그 내담자에게 필요 없는 심리검사를 실시한다’에 39.7%가 ‘한두 번 이상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상담심리사가 상담이나 내담자보다는 자신의 수련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책임’, ‘윤리문

제 해결’과 관련된 문항으로는 ‘동료상담자가 비윤리적 상담을 하는 것을 보고 당사자와 논의하였다’의 응답이 23.1%였다. 이 응답의 경우 실제로 동료상담자의 비윤리적 상담을 목격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으나 비윤리적 상담을 목격하고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회원 전체 30,322명(2018년 5월 31일 현재)중에서 응답한 사람은 966명이었다. 따라서 이 결과를 우리나라 상담자의 경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설문문의 문항들은 ‘비윤리적’ 상황들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비윤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응답한 결과와 응답자의 실제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 즉 문항에 대한 반응은 윤리적으로 응답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질적 연구를 통해 비윤리적인 것을 자각하는 것과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의 설문내용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윤리 강령이었다. 추후 국내외의 여러 학회의 윤리 강령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는 2003년 윤리강령이 제정된 이후 2016년부터는 윤리강령에 대한 의무 교육제도가 생겼다. 이 과정에서 상담심리사들 사이에 윤리의식이 고취되어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특히 변화하지

않은 부분은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상담자의 소진’ 등과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요구되는 윤리적 문제를 상담심리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윤리강령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 할 것인가’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 보호 및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안내가 필요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보호 및 관리의 체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한 윤리 교육과 수퍼비전이 필요하다. 둘째, 상담자들이 소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이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가 상담 성과가 없는데 상담을 계속 하거나 상담자의 스트레스로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소진되었는데 상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소진대처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갈등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긴장과 소진에 대한 대처 능력도 향상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에 나타난 비윤리적 경험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윤리강령 개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은 고정된 불변의 강령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담자들은 윤리강령과 윤리 교육을 통해 쟁점들을 인식할 수 있고, 이런 쟁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윤리강령이 실제 상담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 할 수 없다.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높은 수준의 사고와 깊은 성찰을 복합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자 의심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

는 능력이기 때문이다(Neukrug, Lovell, & Parker, 1996). 넷째, 상담자들의 윤리적 민감성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윤리강령은 이를 실천하는 상담자들의 민감성 즉 윤리적 감수성이 중요하다(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상담자가 상담 수련과정 중에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강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윤리 갈등 경험을 대처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험들이 윤리적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상담자 개개인은 상담자로서 윤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내담자 관계에서 윤리 방향을 정립해야하고 수퍼바이저 또한 위계적 관계 속에 있는 수퍼바이저의 복지를 위해 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더불어 학회 차원에서는 이런 개개인이 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개인정보보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062&cfYd=20171019#0000> 에서 검색.
- 금명자 (2018) 상담심리전문가의 윤리와 적용.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대회. 3월 17일. 서울: 연세대학교 대강당. 미간행.
- 서영석, 최영희, 이소연 (2009). 상담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15-842.
- 안하얀, 서영석, 박성화, 이정윤, 최유리 (2017). 수퍼바이저가 지각한 상담 수퍼바이저의 윤리지침 이행.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4), 915-952.
- 오송희, 이정아, 김은아 (2016). 상담윤리에 관



- 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267-289.
- 우홍련, 허난설, 이지향, 장유진 (2015). 한국상담자들이 경험한 윤리문제와 대처 방법 및 상담 윤리 교육에 관한 실태 연구. *상담학연구*, 16(2), 1-25.
- 이승은, 정남운 (2003). 초심상담자의 소집단 수퍼비전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41-460.
- 조윤진, 이은진, 유성경 (2014). 상담심리치료 수퍼비전에서 수퍼바이저의 부정적인 경험의 변화 과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841-877.
- 최해림 (2002). 한국 상담자의 상담윤리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05-828.
- 최해림, 이수용, 금명자, 유영권, 안현의 (2010). *전문적 상담현장의 윤리*. 서울: 학지사
-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2014). *ACA Code of Ethics*. Alexandria, VA: Author. Retrieved from <https://www.counseling.org/resources/aca-code-of-ethics.pdf>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7) *APA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www.apa.org/ethics/code/>.
- Corey, G., Corey, M. S., & Callanan, P. (2011). *Issues and Ethics in the Helping Professions* (8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Donner, M. B., VandeCreek, L., Gonsiorek, J. C., & Fisher, C. B. (2008). Balancing confidentiality: Protecting privacy and protecting the public.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3), 369-376.
- Ellis, M. V. (2001). Harmful supervision, a cause for alarm: Comment on Gray et al.(2001) and Nelson and Friedlander (2001).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4), 401-406
- Gabbard, G. O. (1994). Teetering on the precipice: A commentary on Lazarus's "how certain boundaries and ethics diminish therapeutic effectiveness." *Ethics & Behavior*, 4(3), 283-286.
- Gottlieb, M. C., Robinson, K., & Younggren, J. N. (2007). Multiple relations in supervision: Guidelines for administration, supervisions, and stud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8(3), 241-247.
- Hill C. (2009). *상담의 기술 [Helping Skills]*.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9년에 출판).
- Kitchner, K. S. (2000). *Foundation of ethical practice, research, and teaching in psychology*. Mahway, NJ: Erlbaum.
- Ladany, N., & Bradley, L. J. (2013). *상담 수퍼비전[Counselor Supervision]*. (유영권, 안유숙, 이정선, 은인애, 류경숙, 최주희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11년에 출판).
- Ladany, N., Lehrman-Waterman, D., Molinaro, M., & Wolgast, B. (1999). Psychotherapy supervisor ethical practices: Adherence to guidelines, the supervisory working alliance, and supervisee satisfac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7(3), 443-475.
- Neukrug, E., Lovell, C., & Parker, R. J. (1996). Employing ethical codes and decision making models: A developmental process. *Counseling and Values*, 40, 98-106
- Pope, K. S., & Vasquez, M. J. T. (2010). *심리치료와 상담의 윤리학[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3rd ed.)]*. (박균열의 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전

- 2007에 출판).
- Stoltenberg, C. D., & Delworth, U. (1987). *Supervising counselor and therapists: A developmental approa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Tinsley, H. E., Workman, K. R., & Kass, R. A. (1980). Factor analysis of the domain of client expectancies about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6), 561-570.
- Tofler, A (1990). 권력이동[Power Shift]. (이규형 역). 한국경제신문.
- Warthington, R, Tan, J., & Poulin, K. (2002). Ethically questionable behaviors among supervisee: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Ethics & behavior, 12*, 323-351.
- Watkins Jr, C. E. (1985). Countertransference: Its impact on the counseling sit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3*(6), 356-359.
- Welfel, E. R. (2005) Accepting fallibility: A model for personal responsibility for nonegregious ethics infractions. *Counseling and Values, 49*(2), 120-131.

원 고 접 수 일 : 2018. 05.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7. 10

게 재 결 정 일 : 2018. 07. 12

## **Counselor Training Process: A Survey on Unethical Experiences**

**Leeyoung Kang**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Myoung Ja Keum**

Daegu University

**Minhee Cho**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experiences of unethical behavior and attitudes during th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An online survey, developed based on 11 categories from the Ethical Code of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revised in 2018), was completed by 996 personnel. Results found that 7/38 questionnaires had over 2.0 scale and 4 among them were i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Confirmation for supervision was received by, ‘Informed Consent Form,’ and ‘Confirmation Prior to Supervision’ was ranked as being skipped most often. In 11 of the questionnaires it was found in the section specific to ‘Counseling Being Forced to Continue Despite Burnout’ that licensed counselors were exhibiting more unethical behaviors than the counselors in training. Understanding and further researching occurrences of unethical behaviors during the process of supervision/counseling training is recommended. Application of these findings in future code of ethics revisions and in the process of ensuring ethical education and training is suggested.

*Key words : unethical experience, counseling training process, supervision, code of ethics*